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31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김승수

장동혁 • 이헌승 • 구자근

신동욱 • 이인선 • 정희용

김위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심신장애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고 이러한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 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형 감경을 목적으로 심신미약상태에서 이루 어진 범죄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재판부 판단에 따라 범죄의 형을 감경해주고 있음.

그러나 음주나 마약류로 인한 범죄는 자의로 사전에 제어가 가능하다는 점과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하는 것은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음주나 마약으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거나 감경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10조제4항 신설).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음주나 마약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심신장애인) ① ~ ③ (생	제10조(심신장애인) ① ~ ③ (현
략)	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음주나 마약류(「마약류관
	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
	른 마약류를 말한다)로 인하여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
	의 행위는 제2항을 적용하지
	<u>아니할 수 있다.</u>